



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



1회용품	준수사항	업종
컵·접시·용기 합성수지·금속박 등 ※종이컵 사용 허용(규제 제외)	사용금지	식품접객업*, 집단급식소 ※배달 및 고객이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 예외적 사용 허용 ※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에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규제 적용 *식품접객업 ①휴게음식점 ②일반음식점 ③주점 ④위탁급식 ⑤제과점
플라스틱 수저·포크·ナイ프 나무젓가락		
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		
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(EL724 환경표지인증) 제품 제외		
플라스틱 빨대·젓는막대 생분해성 빨대·젓는막대의 경우 2024.12.31.까지 사용 가능 ※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('23.11.24~)		
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,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	사용금지	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·가공업,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
광고선전물 신문·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	사용금지	집단급식소, 식품접객업
		대규모 점포
		도·소매업 매장면적 33㎡ 초과 업소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증권 및 선물 중개업,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, 광고 대행업, 공연시설 운영업, 영화관 운영업,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
		목욕장업, 숙박업* *숙박업은 객실 50실 이상 업소
면도기·칫솔·치약·샴푸·린스	판매가능 무상제공금지	대규모점포, 종합소매업, 제과점
비닐봉투·쇼핑백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,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2024.12.31.까지 종합소매업, 제과점업 사용 가능	사용금지	식품접객업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
	판매가능 무상제공금지	도·소매업 매장면적 33㎡ 초과 업소
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, 비닐방석 등	판매가능 무상제공금지·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	체육시설 운동장, 체육관, 종합체육시설 등
우산비닐	사용금지	대규모점포

동 준수사항은 제도 변경의 시행일인 2024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